

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3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1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11. 26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축산과장 정대훈)

가. 제정이유

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놀이터의 기능(안 제3조)
- 3) 관리 및 운영 · 운영방법(안 제4조 ~ 제5조)
- 4) 입장의 제한(안 제6조)
- 5)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(안 제7조 ~ 제8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동물보호법」
- 2)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3)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해당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40530(2025. 10. 24.)호]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1594호

- 예고기간: 2025. 10. 10.~2025. 10. 30.(20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마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과 같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○ 제정이유

- 군에서 조성·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제정내용

- 안 제1조~제2조(목적 및 정의)
 -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, 제2조는 반려동물, 놀이터, 관리자 등의 용어 정의를 규정함.
- 안 제3조~제5조(관리 및 운영) 놀이터의 기능, 관리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6조(입장의 제한) 미등록 반려동물, 맹견, 질병 보유 동물 등의 이용을 제한함.
- 안 제7조~제8조(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) 이용자의 준수 의무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규정함.

○ 관련 법령

-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(정의), 제1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놀이터의 체계적 운영과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상위법령과의 저촉이 없으며 조문 구성과 체계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1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